

윤락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뿌리 뽑을 수 없는 필요악인가.

정부가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제정한지 33년만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지난 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정부측의 개정시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을 만들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 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묶어놓고 그 지역 이외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은 엄단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車鏞碩교수(한양대 법과대학장)는 『세계적으로 성을 법으

윤락행위자를 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 왜 윤락행위의 대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가』고 묻고 『성을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파는 쪽만 선도한다고 윤락이 근절되겠는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尹文子한국교회여성연합총무

는 개정안이 윤락행위자를 일정 시설에 입소시켜 일정기간 「교화」를 받도록 규정한 데 대해 『윤락행위 상대자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만 처할 게 아니라 상습적인 경우는 선도시설에 입소시켜 사회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恩玲)

“윤락행위 무조건 금지는 비현실적” “性 사는 사람 처벌 강화해야 실효”

「淪落방지법」 개정공청회 남녀시각차 뚜렷

이날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들의 토론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윤락」과 「성」을 보는 눈이 남녀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를 단면적으로 드러냈다.

남성 토론자들이 주로 드러낸 생각은 『아무리 엄한 법으로 다스려도 윤락은 결코 근절되지 않으니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

사회학자인 鄭慶均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충족되지 못한 성욕구를 채우기 위한 매매춘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었던 것』이라며 『윤락방지법

로 규제하는 조치는 점점 퇴조하는 현상이므로 무조건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했으며 高學用 조선일보논설위원은 『윤락이란 사회의 하수구와 같은 것인데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상수구로 넘칠 수도 있다』며 현행법을 시대에 맞게 약간 손질하는 정도로 개정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이에 반해 여성측 토론자들은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개정안에 깔려 있는 성차별적인 사고부터 바뀌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基遠변호사는 『개정시안 제1조 1항에서 법의 목적이